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 청 북 도 의 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03일

3. 제안이유

- 기관명칭을 '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'에서 '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'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 변경
- 사업범위 확장 및 구체화, 조항의 체제 정비 및 용어·표현 정리

4. 주요내용

-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변경(안 제명)
 - 「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지역 산업육성,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사업범위 확장 및 구체화(안 제4조)
- 기본재산 조성에 차입금과 수익금 추가(안 제5조)
- 출연금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 마련(안 제8조)
- 조항의 체제 정비 및 용어·표현 정리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배경

- 2003년 개원부터 사용된 기관 명칭이 현재의 기관 기능과 괴리가 있어 고객 인식 부족 및 업무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기관의 핵심기능을 표출할 명칭 변경의 필요성 대두
- 급변하는 기술·산업·정책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·기획 등의 컨트롤타워 수행을 위한 R&D전담 조직 설치 및 직제 개편이 마무리 됨에 따라 조례 정비 필요
- ※ 직제개편 : 2본부 1실 → 3본부 / 정원 증원 : 38명 → 53명(증원 15명)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기관의 핵심기능을 표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기관명을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'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'로 변경
- ※ 충북과학기술혁신원 CBIST(ChungBuk Innovation Institute of Science & Technology)
- 안 제4조는 지역산업육성,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구체화 하였음

1.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
2. 국가과학기술혁신 지원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
3.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지원
4. 지역 과학기술연구개발 기획.조사.성과분석.평가 등 정책연구
5. 전(全)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
6. 첨단산업 기술진흥, 산업.기술 간 융합 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
7. 지식.소프트웨어.정보통신.방송통신.문화.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.진흥사업
8. 국가, 도, 시.군 또는 관련 기관.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, 첨단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.진흥사업
9. 그 밖에 과기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안 제5조는 도와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, 국가의 출연 또는 지원금,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와 기업체, 대학, 후원인 등의 출연금 외에 그 밖의 차입금과 수익금을 기본재산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

- 안 제8조는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상황 등을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
- 그 밖에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, **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**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음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지역주도 혁신성장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단위 혁신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와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
- 충청북도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육성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고자 기관 명칭을 ‘충북과학기술혁신원’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, 사업범위 확장·구체화 및 그 밖의 **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**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